

이천시 인사관리 규정

소관부서 : 자치행정과

제정 1996· 3· 1 훈령 제 19호
 개정 1996· 7· 2 훈령 제 61호
 개정 1998· 2· 4 훈령 제 82호
 개정 1999· 2· 26 훈령 제 92호
 개정 2003· 1· 6 훈령 제130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천시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제도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행정 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이천시 본청(사업소 포함)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과 읍·면·동 소속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.

제2장 승진

제3조(기본원칙) 소속기관(임용기관단위)의 상위직 결원시 보충은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기관간의 균등한 승진기회의 부여를 위하여 도와 시군간 상호교류 등 인사조정을 할 수 있다.

제4조(근무성적평정) ①근무성적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.

②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별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. <개정 98· 2· 4>

제5조(승진방법) ①6급이하의 승진은 현 결원과 당해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내 승진배수 범위안의 자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일괄 심의 선발한다.

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승진 발령시까지 비공개로 관리 한다.

③승진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관내에 승진

임용 할 수 없다.

1. 징계처분·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
2.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○ 정직 - 18월, ○ 감봉 - 12월, ○ 견책 - 6월
3. 근무성적이 당해 기간내에 “가” 평정을 받은 자
4. 임용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진출자
5. 교육기간중 근무태도 및 교육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
6. 공·사생활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
7. 기타 승진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
제3장 지방5급 일반승진시험

제6조(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) ①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현재 5급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는 별표 6에 해당하는 자를 심의대상으로 한다.

③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후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과 초임관리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한 고득점순위자 순으로 「승진임용순위명부」를 작성하고, 당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96·7·2]

제7조(심의제외 대상)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「승진임용의 제한」 사유에 해당자는 인사위원회의 5급심사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.

[전문개정 96·7·2]

제8조(심사승진대상자 효력) ①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승진대상자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.(단, 임용자교육 미이수자는 효력상실)

②심사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승진임용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된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.

[전문개정 96·7·2]

제8조의2(심사승진자 자격정지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인사위원회의 추가심의대상의 자격을 정지한다.

1.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임용전 기본교육성적이 평균60점미만인 자
2. 질병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받음
이 없이 교육 미이수 및 교육기간중 교육지를 이탈한 자

[본조신설 96·7·2]

제4장 전보

제9조(전보의 원칙) ①소속공무원의 전보는 법령상 전보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부서 또는 직위에 1년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하되 6급이상의 주요직위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임용기준에 의하여 전보한다.

②소속공무원을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“자기평가서”와 상사의 “지도관찰서”를 통한 효율적인 보직여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자기평가서 및 상사의 지도관찰서제출) ①5급이하 공무원은 별표 3에 의한 자기평가서를 매년 1회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일을 기준 본인이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근무성적 평정권자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별표 4에 의한 지도 관찰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순환보직) ①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지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 보직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.

②제1항 규정에 의한 순환전보는 감사부서에서 청렴도 측정결과 병·정등급의 취약 업무부서는 2년이내, 기타 업무부서는 3년 범위안에서 순환보직을 하여야 하며 취약부서 근무자를 또 다른 취약부서로 전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2조(결원보충) ①시분청 5급 지방공무원의 결원보충은 도 및 시군간 전출입 절차를 걸쳐 전입 및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요직위 임용기준에 의하

여 시·읍·면·동 6급 공무원으로 충원한다.

②시 본청 6급공무원의 결원보충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요직위 임용기준으로 하고 7급이하 공무원은 사업소 및 읍·면·동 공무원중에서 충원한다.

제13조 삭제 <2003·1·6>

제5장 전입시험

제14조 삭제 <2003·1·6>

제15조 삭제 <2003·1·6>

제16조 삭제 <2003·1·6>

제17조 삭제 <2003·1·6>

제6장 교육

제18조(적용범위)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의 고급공무원 정예교육과정, 고급간부양성과정, 중견간부양성과정, 초급간부양성과정 및 6월이상 국외훈련과정 등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한다. <개정 99·2·26>

제19조(교육성적 우수자 대우) ①삭제 <96·7·2>

②초급 간부양성자 수료자는 읍·면·동 6급 결원직위에 최우선 승진발령할 수 있으며 승진 전보된 자가 1년이상 읍·면·동 근무경력이 있을 때에는 시 본청 6급 결원직위에 우선적으로 발탁할 수 있다.

③6개월이상 국외훈련 교육과정 이수자는 전문분야 또는 이에 상응한 분야에 보직한다.

제20조(교육수료자 사후관리) 제19조에 의한 각 과정 교육수료자는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실무에 응용 활용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직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.

제21조(교육성적 불량자 조치) 각급 교육과정 입교자중 수업태만으로 평가결과 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불량성적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한다.

제7장 임용기준 및 비위자 관리

제22조(임용기준)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관계법령에 규정된 임용요건 외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23조(임용제한) ①승진, 전보, 전출, 전입 등으로 인한 인사이동은 그 대상자를 최소 한도의 범위로 제한시켜야 한다.

②시장은 지방4급 직위에 직무대리로 임명한 자를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제24조(비위문책사항 기록관리)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련한 처분사항을 별표 5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제25조(기타사항) 이 규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무국장이 별도로 정하여 처리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·7·2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·2·4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9·2·26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·1·6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96·7·2, 98·2·4, 99·2·26>

근무성적평정자 및 확인자

구분 기관별	평 정 대 상		평 정 자	확 인 자
	계 급	직 위		
시 본 청 직속기관 사 업 소	5급	실·과·소장 담당주사	소속국장	부시장
	지도관 지도사	과장, 담당주사 직원	농업기술센터 소장	부시장
	6급이하 기능직	담당주사, 직원	실·과(소장)	소속국장
읍·면·동	5급	읍·면·동장	총무국장	부시장
	6급이하 기능직	담당주사, 직원	읍·면·동장	총무국장

[별표 2] <개정 96·7·2, 99·2·26>

주요직위 임용기준

직 위	임 용 기 준
시 실·과장 동장 지방 5급직위	· 도, 시, 군, 읍·면·동 6급중 5급승진 임용 요건 완비자
시본청 담당주사급 6급 직위	· 시 7급중 승진임용요건 완비자 · 읍·면·동 6급
감사담당공무원	· 국가관이 투철하고 공직윤리관이 확고한 자 · 청렴, 정직, 결백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· 행정경력 3년이상자로 감사분야의 전문지식 을 가진 자 - 제외자 - · 3년이내 징계처분을 받은 자 · 직위해제에서 복직된 자 · 당해 계급에서 2회이상 경고(훈계)처분을 받은 자

[별표 3]

자 기 평 가 서

소속 및 직위 (현임 년월일)	직 급 (현직급임용일)	성 명 (생년월일)	담 당 업 무	학력 및 자 격

1. 직무배치에 대한 자기평가

가. 주요경력

근 무 기 간	근 무 부 서	담당하였던 주요업무	비 고

나. 현부서(직위) 근무상태

담당업무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발휘 여부

- (1) 발휘하고 있다.
- (2)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.
- (이 유)

다. 근무희망부서

(1) 희망부서

- 1 희망 : 과
- 2 희망 : 과
- 3 희망 : 과

(2) 업무구분 : 기획, 영선, 회계, 감사, 인사, 전산, 민방위, 도시계획, 건설, 수
도, 보건, 농업, 산림 등

(3) 기 관 : 도 본청, 도 사무소, 시·군·읍·면·동

(4) 기타사항 : 해외연수 : 장기, 단기

 국내연수 : 중견간부 양성반, 초급간부 양성반 등

라. 전보 희망사항

- (1) 현직을 계속 ()
- (2) 부서내의 직무변동 ()
- (3) 즉시 이동 ()
- (4) 6개월이내 전보 ()
- (5) 1년이내 전보 ()
- (6) 미정 ()

마. 전보희망 이유

- (1) 현직에 너무 오래 있어서 ()
- (2) 타부서 경험을 위해서 ()
- (3) 직무환경을 바꿔보고 싶어서 ()
- (4) 기타 ()

2. 자기개발을 위한 자기 관찰

가. 본인이 갖고 있는 자격 및 특기

- (1) 자격 :
- (2) 특기 :

나. 본인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업무분야 ()

3. 근무태도

가. 근무,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.

나. 근무, 성실하게 근무하고 싶으나 사정에 의하여 만족하게 일할 수 없었다.

- (1) 본인의 건강상 ()
- (2) 가정형편상(가족의 질병 등) ()
- (3) 부업상 ()
- (4) 기타 ()

다. 능력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근무의욕에 비하여 실적이 다소 미흡하다.

[별표 4]

지 도 관 찰 서

(. . . ~ . . .)

1. 인 적 사 항

소 속	직 위	직 급	성 명	비 고

2. 주요업무실적(6개월간)

관 찰 시 점	항 목	주요업무처리실적
월		
월		
월		
월		
월		
월		

3. 가정환경

· 가족상황 : 명 (조부, 조모, 부, 모, 처, 자, 기타 명)

관찰항목	관찰의견
(1) 생활 정도 상, 중, 하	
(2) 부업유·무 부업명	
(3) 건강 상태 양호, 보통, 불량 불량사유:	
(4) 생활 상태 · 부채상태 · 금전거래상태 · 주택, 도벽 · 사치, 낭비 · 가족관리 · 기타	

[별표 5]

비 위 관 계 기 록 카 드

· 인 적 사 항

소 속	직 위	직 급	성 명	생 년 월 일	비 고
			(한글) (한자)		

· 비 위 기 록 내 용 (훈계, 경고 등)

처분당시 소속, 직위, 직급	비위내용	적발기관	조 치 사 항		기록자인
			년 월 일	처 분	

본 카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보관한다.

[별표 6] <신설 96·7·2>

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

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	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
1 ~ 5	결원 1인당 4배수
6 ~ 10	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 + 20인
11이상	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 + 35인